

ANDOVER 공립학교 징계절차

소개

본 안내책자는 학생이 징계를 받는 방법과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책자에는 부록 M.G.L. c. 71, 섹션 37H, 37H1/2, 및 37H3/4 의 내용과 603 CMR 53.00. 의 관련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학생의 권리와 여러 가능한 절차에 대한 설명과 참고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의 예시

다음에 해당하는 징계의 조치는 특정한 상황과 부적절한 행위의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징계조치들은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징계조치는 지적된 부적절한 행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수준은 해당 교사와 훈계교육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교사와 훈계교육자들은 학생의 행위, 징계기록, 행위의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격리 학습(Detention)

격리학습.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에 따라 학업 또는 정규수업시간 후에 구금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격리학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사 및 학교/교사 사무실

- (1) 교사의 격리학습은 교실에서 구금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격리학습을 위한 절차를 결정하게 됩니다.
- (2) 학교/복도, 운동장, 카페테리아, 강당 또는 다른 학교 주변에서 정규수업시간 전후에 불량행위를 할 경우 훈계 교육자가 격리학습/사무실 격리학습을 정합니다. 학생이 반복적으로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면 격리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사와 학교로부터 24 시간 전에 격리학습 징계를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일부 경우 학생의 점심시간에 격리학습 징계가 정해지면 24 시간 전에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와 훈계 교육자는 하나의 규칙위반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격리학습을 줄 수 있습니다. 격리학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법적 절차권리는 없습니다.

격리학습의 행위. 학생이 격리학습을 받을 수 있는 예는 아래와 같이 나열되었습니다(이 목록은 격리학습 징계를

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습관적인 지각
- 수업을 빼먹기
- 습관적인 교실내 소란
- 물건 던지기 (얼음 또는 눈)
- 전자 기계를 오전 7:35~오후 2:05 p.m. 사이에 사용
- 학교에서 스케이트보드 타기
- 격리학습을 교사에게 보고하지 않음
- 욕 및/또는 외설적인 말 또는 몸짓
- 학교 내/외에서 불량행동
-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장난감 소유
- 학교 건물 내에서 허락 받지 않은 휴대폰 사용

학급 구금 철회요청. 교감이 정학조치를 했다면 학생은 교장에게 서면으로 격리학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회요청은 학생이 격리학습 통보를 받은 지 1 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학조치를 교사가 했다면 학생은 교감께 서면으로 정학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요청은 학생이 격리학습 통보를 받은 지 1 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철회요청은 기록되진 않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생 기록에 남아있게 됩니다. 학생은 위와 같이 설명한 부분 이외에는 격리학습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교내 정학

교내 정학(In-School Suspension). 교내 정학은 훈계 교육자의 적절한 결정에 따라 정규수업 이외의 활동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배제되는 것입니다. 교내 정학은 학생을 위한 것이고 교사 사무실에서 마칠수 있도록 합니다. 완료된 모든 학교공부는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교사에게 돌려줍니다.

교내 정학을 받은 학생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감 또는 교내 정학을 한 교사는 훈계를 받은 이유를 학생에게 알려줍니다.
2. 학생은 훈계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반박하거나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3. 교감 또는 훈계 교육자가 학생이 불량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교장 또는 훈계 교육자는 학생에게 교내 정학의 기간을 학생에게 말해줍니다(10 일 이내).
4. 학교 정학이 결정되면 교장 또는 훈계 교육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이 조치에 대하여 설명, 조치의 이유와 교내 정학의 기간을 알려줘야 합니다.
5. 교장 또는 훈계 교육자는 학부모/보호자 학부모 회의를 열어 학생에 대해 상의하도록 합니다.
6. 교장 또는 훈계 교육자는 교내 정학이 결정된 날에 교내 정학 통보를 서면으로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 중단조치. 정규수업 시간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말하고 훈계 교육자의 재량에 따라 학교활동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Goss vs. Lopez, 419 U.S. 565 (1975)에 따라, 학생이 10 일 이하의 학교 중단조치를 받아야 할 경우, 미국 정당권리 하에서 불공정한 권리의 박탈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10 일 이상의 정학조치를 받게되는 학생은 절차적 권리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법에 의하면 M.G.L. c. 71, §§ 37H 및 37H1/2 의 규정을 제외하고 최대 90 일 이상의 학교중단/정학 조치를 허가합니다.

정학조치를 받을 수 있는 행위. 아래와 같은 행동은 학생 정학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여기에 나열된 모든 행위는 정학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내 정학, 퇴학, 장기 정학, 단기정학 또는 영구 정학:

- 술의 지참, 사용 또는 배포
- 락커, 벽 또는 학교 건물, 건물 양방향 또는 운동장에 이름낙서, 메시지, 그림, 그림낙서 등.
- 학교 건물을 허락 없이 나갈 경우
- 학교동료들 또는 학교 종속의 다른 사람에게 폭력행사 (협박적 공격, 구타, 발로 차기, 뺨 때리기, 밀기)
- 학교를 파기, 손상, 또는 개인적으로 훔치거나 학교 재산을 훔치거나 시도를 할 경우

- 담배 제품, 전자담배를 소유 또는 사용할 경우
- 인화성 물질인 성냥 또는ライター 사용
- 공격, 협박 또는 복수의 성적, 인종적 또는 기타 유사한 행동을 할 경우
- 폭력적이나, 저속하거나 은어적인 말을 사용할 경우
- 구두 또는 신체적인 협박
- 거짓경보를 올릴 경우
- 학교 교직원 또는 규정에 대해 반항적인 태도
- 화재안전 장비를 사용 또는 사용을 시도할 경우
- 싸움을 할 경우
- 현장학습을 할 때 소란스런 행동을 할 경우
- 학습에 방해가 되거나 동료학생들을 위협에 빠트릴 경우
- 학습을 크게 방해하도록 동료학생을 부치기는 행동
- 폭죽, 불꽃놀이, 악취 탄의 지참 또는 사용을 할 경우
- 수업에 꾸준하게 지각 또는 무단결석 및/또는 지각, 수업을 빼먹을 경우
- 학교정학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불량 행동을 할 경우
- 친구를 괴롭히거나, 같이 동참하거나 주변인 및/또는 보복을 할 경우
- 사이버 괴롭히기, 사이버 괴롭히기에 참여, 방관 및/또는 보복(이메일, 문자, SNS 포스팅)등을 통해 보복을 할 경우 사이버 괴롭히기는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내용이 전달이 될 경우에 해당
- 협박, 협박에 동참, 방관 및/또는 반항을 할 경우

- 못살게 굴기, 폭력, 강탈 또는 협박, 폭력 또는 동료학생 또는 교직원, 방관 및/또는 반항에 대한 강탈행위
- 어른에게 괴롭히기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 괴롭히기 또는 동료 못살게 굴기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 교직원을 공격 (부록참고 M.G.L. c. 71, §37H1/2)(주의: 이런 행동은 무기한 정학 또는 90 일 이상의 정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죄 혐의 (부록참고 M.G.L. c. 71, §37H1/2 참고)(주의: 이런 행동은 무기한 정학 또는 90 일 이상의 정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무기 예를 들어, 칼 또는 총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무기의 소지 (참고 M.G.L. c. 71, §37H)(주의: 이런 행동은 무기한 정학 또는 90 일 이상의 정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M.G.L. c. 에 정의된 마약의 지참 94C 과 불법적인 마약과 처방된 의약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마약포함 (참고 M.G.L. c. 71, §37H)(주의: 이런 행동은 무기한 정학 또는 90 일 이상의 정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사추세츠 주 및 연방법, 또는 Andover 시의 법에 따라 이러한 마약의 소지 또는 방출을 의심을 받을 경우 지역 경찰서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부록참고 M.G.L. c. 71, §37H1/2) Andover 공립학교, Andover 경찰서, Essex 카운티 지방검사 사무소의 양해각서에 따라 학생이 폭력적, 비행범죄 또는 마약사용, 범죄행위, 교내 또는 학교 관련 행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류소비에 대한 징계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기 정학 (10 일 또는 그 이하). 10 일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의 정학조치를 받기 전에 학생에게 청문회/회의를 열어줘 통보, 설명을 학생에게 해야 합니다.

정학통보: 교장 또는 훈계 교육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을 보내 조치를 받기 전에 혐의를 받은 학생의 불량행동에 대해 상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교장 또는 훈계 교육자와 상담: 학생은 교장 또는 훈계 교육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훈계 교육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를 이 회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참석을 할 경우 학생의 불량행동과 추가적인 정보 또는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것 등을 상담하게 됩니다.

증거의 설명: 이 회의에서 학생은 혐의를 받은 이유, 조치의 종류와 다른 관련내용을 설명을 듣게됩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참석을 할 경우 학생의 불량행동과 추가적인 정보 또는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것등을 상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은 상담을 할 기회, 증인대면, 반대신문 또는 자신의 증인을 불러 지적된 행위를 반박할 기회가 있습니다. 교장 또는 훈계 교육자의 재량에 따라 학생은 자기를 고발한 자 또는 증인을 불러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결의: 교장 또는 훈계 교육자는 서면 결의를 이행해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정학을 알려주고 조치의 주내용과 결과, 조치의 기간과 효력, 학교로 복학하는 날짜 그리고 숙제과 다른 학교공부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단기 정학항소 (10 일 또는 그 이하): 교감 선생님이 정학조치를 했다면 학생은 교장선생님께 서면으로 정학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철회 요청은 정학조치 통보를 받고 1 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학철회는 기록되진 않지만 정학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생 기록에 남아있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외에는 철회요청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조치를 받을 경우 철회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장애 학생의 정학조치: 장애학생은 한 학기동안 10 일 또는 그 이하의 누적된 일수 동안 정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정학은 한 학기에 10 일이 넘어서는 안되며 연방과 주법에 따라 적용이되어야 합니다.

장기정학(10 일 이상): 10 일 이상의 정학조치를 받은 학생(학기 또는 연이은 학기)은 90 일 까지 형식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정학 이외에 학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교장 선생님은 학생기록과 정학조치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서류를 검토할 권리.
- 대변인이 대표할 권리 (학생부담)
- 혐의 받은 사건에 대한 학생의 개인적 설명
- 학생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증인 요청
- 학교 또는 검사가 대변하는 반대신문
- 회의 기록의 요청
- 정학기간 동안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학생의 학업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정학철회를 할 수 있는 절차 안내와 철회할 권리

장기정학 철회 (10 일 이상): 학생이 장기정학을 받을 경우(단일 혐의에 대해 10 일 이상 또는 학기 내에 다수의 조치를 받아 10 일 이상의 누적된 정학조치를 받을 경우), 그리고 교육감에게 철회를 요청하길 원하면 정학을 받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5 일 이내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철회요청에 대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훈계 교육자는 철회요청을 받고 3 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청문회에 대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훈계 교육자는 학부모/보호자를 청문회에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학생은 장기정학 조치를 준 교감 선생님의 청문회 때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지명된 학생은 청문회 오디오 녹음을 할 수 있고 학생, 학부모/보호자가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회를 열 것이며 조치를 진행 또는 조치를 줄이는 결정을 통보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구의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긴급 퇴학. 학생의 긴급퇴학은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지명된 학생이 타인 또는 재산에게 위협을 야기시키거나 그 위협성을 중지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교육감 또는 지명된 학생은 아래와 같이 해야합니다.

- 학생을 학교에서 긴급 퇴학하기 전에 학생의 안전과 운송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에 앞서 학생, 학부모/보호자에게 구두로 합당한 이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가 참석하는 청문회를 교장 선생님의 청문회를 하기 전에 열어야 합니다. 긴급 퇴학조치를 하기 2 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날짜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진행).
- 청문회가 열린 같은 날에 구두로 결정을 발표해야 하고 다음 날까지 청문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학생 정학. 정학조치를 받은 학생(교내 정학 제외)는 교내 또는 학교에 정학기간 동안 출입을 금지하고 어떠한 학교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학기간이 주말 또는 방학기간을 포함할 경우 학생은 전기간에 걸쳐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학조치 징계처분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학기가 끝나기 전에 교장 또는 교감과 상의하여 정학조치를 받거나 여름동안 학교공부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정학징계를 받는 학생은 징계처분을 다음 학기 전까지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학교 지원 활동이 학기전에 있을 경우, 이 기간도 징계처분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학생의 정학 정책. 장애학생은 한 학기동안 10 일 또는 그 이하의 누적된 일수 동안 정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정학은 한 학기에 10 일이 넘어서는 안되며 연방과 주법에 따라 적용이되어야 합니다.

퇴학/무기정학(Expulsion/Indefinite Suspension)

퇴학/무기정학. 퇴학은 학교에서 제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정학은 무기한 기간동안 학교에서 정학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M.G.L. c. 71, sections H 및 H1/2 에 따라 M.G.L. c. 따라 좁은 범위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학/무기정학 기본규정. M.G.L., c. 71, 섹션 37H 에 따르면 교감은 학교 또는 학교 지원 행사, 체육경기, 현장학습, 위험한 무기 또는 마약 소지, 교감에게 폭력행사, 교감, 교사, 교생 또는 다른 교직원을 학교 또는 학교지원/학교 관련 행사에서 학생을 추방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학절차는 이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행되며 본 안내책자 부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M.G.L., c. 71, 섹션 37H 에 따르면 교감은 형사적인 증범죄와 범죄혐의 받은 학생의 추방 또는 법정에서 증범죄 또는 비행 청소년으로 유죄로 인정한 생을 추방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학과 무기정학 절차는 이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행되며 본 안내책자 부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퇴학 절차. 퇴학징계를 받은 학생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

1. 퇴학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통보를 학생/가정에서 사용하는 주 언어로 통보 받게 됩니다. 이 공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a) 청문회의 일자/시간/장소
 - b) 혐의 종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
 - c) 학교를 대변하는 증인의 목록
 - d) 청문회에서 학생의 권리와 진행될 절차에 대한 요약

- e) 학생이 개인적 교육계획이 없는 경우 대체 교육계획에 대한 권리공지
 - f) 교장의 전화번호
2. 변호사 또는 대변인이 대표할 권리(학생부담)
 3.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4. 청문회를 열기 전에 정리된 증거서류
 5.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는 증인의 요청 및 질문할 권리(증인 반대신문을 원할 경우 보복의 가능성으로부터 증인 보호가 우선)
 6. 청문회의 기록할 권리
 7. 청문회의 기록을 학부모/보호자가 사용하는 주요 언어로 번역할 권리 및
 8. 서면으로 결정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포함하여 결정철회와 대체적인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학생 권리

무기정학 철회요청 학생은 M.G.L. c. 71, 섹션 37H1/2 (중범죄 혐의 등)에 따라 정학 철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교육감이 정학의 조치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5 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퇴학 철회요청 학생은 M.G.L. c. 71, 섹션 37H1/2 (중범죄 혐의 등)에 따라 퇴학 철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교육감이 퇴학 징계 처분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5 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학생은 M.G.L. c. 71, 섹션 37H1/2 (중범죄 혐의 등)에 따라 퇴학 철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교육감이 퇴학 징계 처분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장애학생의 퇴학 철회규정 . 장애학생에 대한 선행된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학/퇴학 학생의 학습진행. 정학 또는 퇴학 징계 조치를 받은 어떠한 학생도 징계를 받는 기간동안 교육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ndover 공립학교는 학생을 위한 대체적 학습교육 계획의 수립을 하여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학 또는 퇴학 학생. 학교로부터 정학을 받거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를 받는 기간동안 어떠한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학 또는 퇴학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내에 출입을 하거나 학교지원 행사에 참여할 경우 추가로 1 일이 정학 기간에 추가될 수 있으며 경찰이나 무단출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학의 기간은 학기가 시작일과 함께 종료가 되고 징계받은 학생은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학생의 징계

장애인교육법(IDEA)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학생장계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른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한 개요에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인 교육계획(IEP)에 따르면 훈계규정에 적용이 가능한지 또는 이 규정이 학생의 장애에 따라 조정이 되어야 하는 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 일년에 10 일까지 적용되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학생이 한 학기에 10 일 이상 이 프로그램에 제외될 경우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담당팀은 행동 평가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이 팀은 학생의 행동이 장애 즉, "장애에 따른 결과"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학생의 불량행동이 장애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지만 교육구는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을 받는 기간 동안에 교육학습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장애에 따른 행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학생은 특수교육팀이 학부모 동의하는 새로운 IEP 를 개발하기전까지 현재학습으로부터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무기 또는 마약 소지 제외).

학생이 교내 또는 학교 행사에서 마약소지, 사용, 판매 또는 권유할 경우 학교는 이 학생에게 45 일까지 임시적으로 대체 교육학습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명된 학생의 행동이 잠재적으로 다른 학생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경우 학생에게 45 일까지 적절한 임시 대체교육 학습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가 특수교육 팀의 "장애에 따른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는 특수교육 심판과으로부터 긴급 정당한 법 절차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학생의 보호절차에 대한 정보를 자세한 정보를 알려면 초등학교 Pre-K-5 (978/623-8542)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부장인 Angelique DeCoste 과 특수교육 집중 프로그램장인 Heather Eigen K-8 (978/623-8900 내선번호 4114)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